● 목 차

993 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995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 예규 997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일부개 1014 정예규 1016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1044 공지사항 1047

# ● 규칙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97호 2018. 8. 3. 공포)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액"을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하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30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 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제10조의2(육아휴직수당 등)

- ① (생 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법관인 경우 그 법관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육아휴직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 2. 대상 자녀가 둘째 이후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 ③ ~ ⑧ (생 략)

	711	Ö	긴		
제10조의2(육아	휴직	수당 분	등)		
① (현행과 같	음)				
2					
				¬	-1 1
				<u>금액으로</u>	. 하며,
그 상한액은	20	0만원	<u>]</u>		
<u></u>	후단	삭제〉	<u>-</u>		
<u>〈삭 제〉</u>					
<u>〈삭 제〉</u>					

③ ~ ⑧ (현행과 같음)

## ◎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98호 2018. 8. 3. 공포)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중"을 "제1항에 따른 처분 중"으로, "한다"를 "하고, 「가사소송법」 제43조에 따른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가사소송법」 제43조에 따른 즉 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제4조(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① · ② (생 략)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 또는 특별 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 ⑩ (생 략)

## 개 정 안

제4조(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① · ② (현행과 같음)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 ⑩ (현행과 같음)

# **ං**예 규

# ◎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53호 2018. 7. 27. 결재)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 제2-4호, 제8-1호, 제8-2호, 제8-3호, 제9-1호, 제9-2호, 제9-3호, 제9-4호, 제9-5호, 제14-1호, 제14-2호, 제16-1호, 제16-2호, 제18호, 별지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2-1호 양식]

# 금전 공탁통지서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	성 명 (상호, 명칭)		피공	성 명 (상호, 명칭)			
자	주 소 (본점, 주사무소)		탁 자	주 소 (본점, 주사무소)			
	공 탁 금 액	한글 숫자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공 탁 원 인 사 실		·				
1	공탁으로 인하여 소	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1	반대급부 내용						
우	l와 같이 통지한니	다 대리	의 주	수			

 위와 같이 동시합니다.
 대리인 주소

 공탁자 성명
 인(서명)

 1. 위 공탁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별지] 안내문의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에 출석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우리 공탁소에 제출 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2. 공탁금 출급청구시 구비서류 등
- ※ [별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이체 가능한 은행을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4. 공탁금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소멸시효 중단 등)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 5.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때에 청구서에 이의유보 사유(예컨 대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 등)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6. 공탁통지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7. 사건 내용은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통지서 하단에 발급확인번호가 기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청된 사건이므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관련 문서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송

법원 지원 공탁관 (문의전화 :

(인)

※ 피공탁자가 국가인 경우 공탁통지서는 소관청의 장에게 발송함.

#### [제2-4호 양식]

## 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

공 탁	번 호		년 금 제	<u>ই</u>	ا	월	일 신청	법령조	항			
타 (상	성 명 ·호, 명칭)				피공탁자	성 (상호						
자 (본점	주 소 ], 주사무소)				자	주 (본점,	소 주사무소)	)				
공 탁	금 액	한글 숫자			<u>]</u>	보 관 은	은 행			은행		지점
형사사건	사건번호		경찰/ 지방? 지방!	범찰청	;	년제 지청 지원		형제 고단(합)	호 제		호	
	사건명											
공 탁	원 인											
사	실											
반대급부	- 내용 등											
위와 깉	이 통지합니	1다.		대리	기인 주	-소						
-	공탁자 성명		인(서명)	)	성	명			인(	(서명)		

- 1. 위 공탁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별지] 안내문의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우리 법 원 공탁소에 출석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2.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이체 가능한 은행을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3. 공탁자가 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귀하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 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탁자가 회수제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가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우리 공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 습니다

- 4. 공탁금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소멸시효 중단 등)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 5.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때에 청구서에 이의유보 사유(예컨대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 등)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6. 공탁통지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7. 사건 내용은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통지서 하단에 발급확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청된 사건이므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송	
법원		지원	공탁관		(인)
		(문의	저화 :		)

#### [제8-1호 양식]

#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 굵은 글씨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打下	_ 271 丁1	<u>r는 한무지 /</u>	<u> 새야시기 마엽니니</u>	1.						
# 상호, 명칭)	3	고타버ㅎ		녀그 제	ਨੋ	ت	그 타 그 애				
합		) 7 2 2		현 급 계	<u></u>	°	, , , ,	숫자			
합	_	성 명				피	성 명				
자 (법인등록번호)	공					ァ					
사						탈					
생구   청구금액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 금액 합계금액 비고 한글 (은행) (은행)	자										
전				이기이 처그	7] 7]-	ol z		하게그애	ні л		
변환	청구		104	1/1-1/01					-1 35		
보관 은 행   연행   법원 지점   회수청구시   기억구시   기억구	내역			_					-1 -11 <del></del> 1		
청구 및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시겠습니까?   미법 제489조에 의하여 회수   미법 제489조에 의하여 회수   미법 제489조에 의하여 회수   마시고(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 아래 ※5. 참조 )   라시거나 기타라 에 간단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라보권 실행									기새암.		
이의유보자유					은	행	법원 지주				
** 해당단에 및 이나으(공탐을 수락하고 출급함, 아래 *5. 참조)	7	성구 및						회수청구시			
# 해당한에 ☑ 이나니오(공탁을 수략하고 출급한, 아래 #6. 참조) 이나시오(공탁을 수략하고 출급한, 아래 #6. 참조) 이나시오(공탁을 수략하고 출급한, 아래 #6. 참조) 이나오(공탁을 수략하고 출급한, 아래 #6. 참조) 이나오(공탁을 수약하고 출급한, 아래 #6. 참조) 이나오(공탁을 수약하고 출급한, 아래 #6. 참조) 이나오(공탁을 수약하고 출급한, 아래 #6. 참조) 이라면 이라면 기타( 이라면 비밀보하고 함께 등이 이라면 이라면 이라면 이라면 이라면 이라면 이라면 이라면 이라면 이라	이의	유보사유					☐ <del>□</del> □ ₩ -1]400 =	7세 시키시 된人			
하시거나 기타란 이 간단히 기재하 시기 바람나다.			□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아래 ※5. 참	조 )	│ □ 민립 세489△	2에 의하여 외우			
하시기나 기타란 이 간단히 기재하 시기 바랍니다. 기타( ) 의함 이 관단이 기재하 시기 바랍니다. 기타( ) 의함 이 간단히 기재하 시기 바랍니다. 기타( ) 의라 기타( ) 기반( 취하 · 해제증명 등 기타( 기반( 기반( 기반( 기반( 기반( 기반( 기반( 기반( 기반( 기반	※ 해	당란에 ☑					□ 착오곳탁(착.	오증명서면 첨부 필요)			
지기 바랍니다.	하시기	나 기타란	□ 담보권 실	행 🗆 배당	에 의함		, .	,			
공탁통지서			□ 채권양수여	에 의함					⊦압류취하·		
의료	시기 1	바랍니다.	□ 기타(			)	취소: 해제	등)			
비고 (첨부서류 등)			□ 곳타톳지서	□ 곳탐서 □	신부증 사보	□ 위	인장 🗌 이감증	명서 □ 주민등록등・초보			
대		_							주명		
작 보 주 명									0 0		
기타 ( 기타	(첨투	부서류 등)						제제주면 두			
제좌입금 □ 포괄계좌입급(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 첨부 의 같이 청구합니다.  변 월 일				e — n=n=e	0 0 2 7 0	0 0	□ /  B     -  -	11 11 0 0 0	)		
제작입금				] 근(근유기과 ·	7.5	메 <b>잔버</b> 등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변 월 일    **********************************	계	 좌입금						) : 곳탁금 계좌입금신	첫서 첨부		
변 월 일    **********************************	의	아 가이 처.		20(00 12.		11 1 1 1 1 1 1	*	)· 0   1	0 1 11		
청구인     대리인       주소 :     주신 :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인(서명)       성명 :     (전화번호 :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위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11.	7 E 1 0	1 8-1-1.		녉	월	일				
주소 :			청-	구인				대리인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성명 : 성명 : (전화번호 : ) 인(서명) (전화먼호 : ) 인(전화먼호 : ) 인(전화	주소	:				7,					
성명: 인(서명) (전화번호: 인(서명) (전화번호: ) 인(서명) (전화번호: ) 의 성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의 보원 지원 공탁금 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등록)번호 :					.1(.1-1)			
(전화번호:     (전화면오: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별원     지원 공탁관     (인)       위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별     월     일			0 1/2	인(서명)				' .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위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2( 10)		(전호	·번호:	)			
년 월 일 <u>법원 지원 공탁관 (인)</u> 위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b>년 월 일</b>	· - ·		가한니다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위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b>년 월 일</b>	''	015 6	1 1 1 1 .		녀	원	이				
위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b>년 월 일</b>					Ľ	근	본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위	위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수령인(청구인 및			일	(인)			

- ※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신분증을 확인) 날인 대신 서 명할 수 있습니다.
  -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 (서명)하 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3.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급·회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 4. '계좌입금'란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5. 공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에 ☑하고,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6.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에 ☑하고 출급하면, 공탁원인사실·공탁금액 등 공탁(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제 1550호

11

## [제8-2호 양식]

#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 청구서

	공 탁 번 호		년	증 제			호					
공탁	성 명 (상호, 명칭)					피 공		성 명 호, 명칭)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탁 자		등록번호 등록번호)				
	명 칭		장	수		총 액	면금	액면	현금, 기호,	번호	비	고
청구												
내역												
	보 관 은 행				은형	행			지점			
청 사	구 및 이의유보 유											
비	고(첨부서류 등)											
위:	와 같이 청구합니다	·.										
				년		월		일				
청·	구인 주소			τ	대리인	<u>민</u> 주소	<u>-</u>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 성명		인(서명)				성명	}		인(서명)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	원		지원	공탁관		(인)		
위	위 유가증권과 그 이표(공탁유가증권출급·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덕	경인(청구	구인 1	또는 대	내리인)	성명		(인)		

- ※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1,000만원 이하의 공탁유가증권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 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신분증을 확인)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3.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 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8-3호 양식]

# 공탁물품 출급회수 청구서

	공 탁 번 호	년 물	- 제		<u>ই</u>		
공	성 명 (상호, 명칭)			피 공	성 명 (상호, 명		
탁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탁 자	주민등록변 (법인등록변		
	명	칭		종 투	Ē	수 량	비고
청구							
내역							
	구 및 이의유보						
사	<del>П</del>						
	고(첨부서류 등)	,					
위.	와 같이 청구합니다	다.					
			년	월	일		
⇒1	7.41 7.1		-11 -1	۸l <b>ع</b> ۱			
성·	구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del>.</del>	내디	인 주소	<u>.</u>		
	(사업자등록 f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0 0		2(10)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Ľ	ㄹ	근		
		ì	법원	지원	공탁관	(인)	)
위	공탁물품(공탁물품	품 출급・회수청구/	서 <b>1</b> 통)을 :	수령하였	摬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청	구인 또는	대리인	) 성명	(인	)

- ※ 1.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3.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 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9-1호 양식]

#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

공탁번호			청구금액							
입금계좌번호	은행		위번호 : 금 주 : 신청인	본인						
청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급 (회 수)	인	첨부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청인이 수	└ -령할 위 공탁금을	신청인의 비용부	담으로 위 예금							
		년	월 일	<u>.</u>						
	신청인	주소								
		성명	(인	) (전화번호 )						
	대리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 (전화번호 )						
		법원	지원 공탁	관 귀하						
	고객정보 등록필 : ○○은행 ○○지점 (인)									

<sup>※</sup>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9-2호 양식]

# 공탁금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

2018년 8월 15일(수요일)

입 금 대 상 공 탁 금	Ⅰ 향으 시점이어 중글・하수정구자가 되느 귀 워의 관탁글 서부									
입금계좌번호		은행		지점 계조						
				예	금 주 : 신청	인 본인				
출	급 (회	수)	인			11-1-11-11-11-11-11-11-11-11-11-11-11-1	1			
성 명						- 실명확인증표 사본				
(상호, 명칭)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주	'민등폭증 등)			
주민등록번호						- 대리신청 시 위임경	항,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번호	)									
						대하여 동일계좌 입금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	인) (전화번호	)			
		대리인	주소							
			주민등	등록번호						
			성명		(	인) (전화번호	)			
				법원	지원 공	'탁관	귀하			
					— -j] -	거나 드라피 . ㅇㅇㅇ케	0 0 7 7 (0)			
					고객/	정보 등록필 : ○○은행	○○시점 (인)			

<sup>※</sup>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9-3호 양식]

# 공탁금 포괄계좌입금 해지 신청서

예금계좌은행	은행 지점
예금계좌번호	
예 금 주	신청인 본인
본인이 귀	원에 신청한 위 계좌에 대한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에 대하여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전화번호 )
	대리인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 (전화번호 )
	법원 지원 공탁관 귀하
	고객정보 등록필 : ○○은행 ○○지점 (인)

<sup>※</sup>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9-4호 양식]

#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원거리 신청용)

접수공탁법원			접수공탁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관할공탁법원			관할공탁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관할공탁법원 공탁사건번호			청구금액							
입금계좌번호	은행	. –	·번호 : 금 주 : 신청인	본인						
출	급 (회 수) 인			- 실명확인증표 사본						
성 명 (상호, 명칭)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청인이 수령할 위 공탁금을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전화번호 )						
	대리인 주소									
	주민등	등록번호								
	성명		(인)	(전화번호 )						
	관할공탁법원:		법원	지원 공탁관 귀하						
			고객정보	└ 등록필 : ○○은행 ○○지점 (인)						

- ※ 1. 본 신청서를 접수한 은행은 접수 후 지체 없이 과세정보를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에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2.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9-5호 양식]

#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국가·지방자치단체용)

입금대상 공탁금	향후 신청인이 출급ㆍ회수청구자가	되는 공탁금 전	부							
	은행 지점 계조									
입금계좌번호	예	금 주 : 신청인	본인							
혼	급 (회 수) 인		- 실명확인증표 사본							
명 칭		첨부서류	- 설명확인공표 사진 (사업자등록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사업자등록번호	5_		- 네니션성 시 귀급성							
향후 신청인이 출급·회수청구자가 되는 모든 공탁사건에 대하여 동일계좌 입금을 신청하오니, 공탁금 보관은행에서는 위 신청인의 과세정보가 각 보관은행에 공유되도록 처리한 후,고객정보 등록필에 직인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l							
	신청인 주소									
	명 칭 대리인 주소	(0)	<u>l</u>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성 명	(୧)	l) (전화번호	)						
		법원	지원 공탁관	귀하						
고객정보 등록필 : ○○은행 ○○지점 (인)										
공탁소의 각 보관은행 과세정보 등록 확인 : 확인 필 □, 미등록으로 인한 재처리 요망 □										
	기사원 쇼웨쇼 기사 중 기계 AIAI 키그	7 F 7 7 7 F -								

- ※ 1. 본 신청서를 접수한 은행은 접수 후 지체 없이 전국공통 포괄계좌 등록을 통해 과세정보를 모든 공탁금보관은행에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2. <u>각 보관은행 과세정보 등록 확인은 공탁소에서 과세정보 확인 후 체크하여야 하며, 전체 또는 일부 보관은행 과세정보</u> 미등록시에는 '미등록으로 인한 재처리 요망'에 체크 후 다시 보관은행에서 재전송 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제14-1호 양식]

# 공탁금 이자 청구서

공탁번호	년 금 지	에 호	공탁금액	한글	
등탁단모	인 급 ^	개 오	<b>장</b> 위 급 위	숫자	
위 공탁금에 대한	한 년 월 일	부터 년 원	<u>일</u> 일까지의 이기	자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대 리 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성명 :	인(서명)	
성명 : (전화번호 :	인(서명)		(전화번호 :	)	
(신와민오 :	)				
위 청구를 인기	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위 공탁금이자	(공탁금 이자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	(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El O	(인)

- ※ 1.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본인의 인 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2.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급회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 3.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 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14-2호 양식]

# 공탁유가증권 이표 청구서

공탁번호	명칭	장수	총 액면금	액면금 기호, 번호	청구이표	지급기일	장수
위와 같이	이표의 지급을	청구합	나다.				
			년	월 일			
	청 구 약	인			대 리 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성명 : 인(서명)			
성명 :	인(사			(전화번호:	<b>가번호</b> : )		
(전화번호 :		)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공탁유가증권 이표 장 (총액 ) 위 공탁유가증권 이표(공탁유가증권 이표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	!인(청구인 또는 r	내리인) 성명		(인)	

- ※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표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신분증을 확인)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3.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 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16-1호 양식]

# 공탁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성 명							
	자 격							
신 청 인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구분		□ 열람			□ 복사			
	법 원							
대상기록	공탁사건번호			공탁급	금액			
	공 탁 자			피공틱	<b>탁</b> 자			
복사할 부분							(복사매수	매)
복사비용	원 ( 매×50원)			(수입인지	] 첨부련	<u></u>		
비고								
영수일자	년 원	월 일	영	수인			인(서명)	
		년 위 신청인	월	일	0	<u>]</u> (서명)		

- ※ 1.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야 합니다(단, 공탁규칙 제59조 제3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3.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 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4. 공탁관계 서류에 관한 등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열람청구의 연장으로 공탁관의 인증이 없는 사본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6-2호 양식]

# 사실증명신청서

신청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탁사건번호 공탁사건번호 공탁자건번호 고양되어 의용학자 전 기의 등학자 의 기의 기의 등학자 의 기의 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공략자건번호       공략사건번호     공략금액       공명의 목적       증명의 목적       분선     월     일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자 격					
전화번호   日本 원   공탁사건번호   공탁급액   교육탁자   교육탁	신 청 인	주 소					
변 원 경 공략사건번호 공략사건번호 고 공략금액 고 공략구액 고 공략가 고 고 공략가 고 고 공략가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주민등록번호					
중명대상서류 공탁자 교육타자 회공타자 회공타자 기공타자 기공타자 기공타자 기공타자 기공타자 기공타자 기공타자 하는 내용 기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일 기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전화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증명의 목적       증명을 받고자하는 내용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법 원					
증명을 받고자 하는 내용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증명대상서류	공탁사건번호			공탁	금액	
증명을 받고자 하는 내용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공 탁 자			피공	탁자	
하는 내용  - 년 월 일 - 위 신청인 인(서명)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증명의 목적				1		
하는 내용  - 년 월 일 - 위 신청인 인(서명)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하는 내용						
위 신청인 인(서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01	<u> </u>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위 신청약	2]		인(서명)	
	위의 사실을 증	명합니다.					
법원 지원 공탁관 (인)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 ※ 1.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받고자 하는 수에 1통을 더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야 합니다(단, 공탁규칙 제59조 제3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3.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 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18호 양식]

# 동의서(승낙서)

공	탁번호	년 금(증, 물) 제	<u></u>				
공	탁금액						
	성 명 (상호, 명칭)						
동의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성 명 (상호, 명칭)						
상대방 (동의받는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첨	부서류	1.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1부 2.					
위 상대방(동	등의받는 자)에게 이 시	나건 공탁금을 지급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하는 자 성명(상호 등) (인감)							
지방	지방법원 지원 공탁관 귀하						

<sup>※</sup>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별지양식]

##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

귀하가 피공탁자로 지정된 공탁금이 납입되어 있으므로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표를 참조 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구	분	개 인	법 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관공서			
		공탁통지서	0	0	0	0			
	5천만원 초과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0	0	0	×			
공		신분증	0	0	0	0			
   탁	5천만원 이하	공탁통지서	×	×	0	0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0	0	0	×			
금	1천만원 초과	신분증	0	0	0	0			
   액		공탁통지서	×	×	×	×			
'	1천만원 이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	×	×			
		신분증	0	0	0	0			

-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 액면금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 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 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대법원행정예규) 참조).
- 2.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에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 용하여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공인인 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합니다.
- ※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이체 가능한 은행을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용인감계는 허용되지 아니함)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가져 오시기 바라며,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4.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것),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친권은 공동행사가 원칙이므로 부모 중 한명이 오실 경우에는, 배우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증명서를 추가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 5. 법인의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외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6. 피공탁자 여러 명을 상대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나 확정판결서 등 출급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출급이 가능합니다.
- 7.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 교회 등)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외에 정관 또는 규약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대표자선임결의서 등)에는 2인 이상의 성년이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8. 공탁금 출급청구서 양식은 우리 법원 공탁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 1550호

## ◎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54호 2018, 7, 27, 결재)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1. 중 "장기미제 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공탁사건"을 "장기미제 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공탁사건(「공탁규칙」제43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제5조 (인가 전 결재)

1. 인가 전 결재할 공탁사건 등 공탁관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공탁사 건" 또는 "고액공탁사건(지급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 여 출급 · 회수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 를 인가하기 전에 청구서의 여백에 별지 1과 같은 결재란을 만들어 소속과장 (시·군법원의 경우 시·군법원 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소속과장의 부재시 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소속과장과 사 무국장의 부재시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원서 기관이 공탁관 또는 대리공탁관으로 공 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공탁법」 제 14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하다

#### 개 정 안

### 제5조 (인가 전 결재)

1.	인가 전 결재할 공탁사건 등
	" <u>장기미제 공탁사건 중 공탁</u>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공탁사건
	(「공탁규칙」제43조에 따라 지급하는 경
	<u>우는 제외한다)</u> "

#### ○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55호 2018. 7. 23. 결재)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2호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각각 "공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직렬·직종의 구분) 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직렬·직종 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 1. 환경관리직(환경관리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등)
- 가. 시설물 청소, 주차관리, 건물의 출입자 점검, 도난, 화재방지 등 환경정비 및 경비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 2. 행정지원직(사무보조원, 민원안내원 등)
- 가. 사무, 행정, 민원안내 분야에서 지원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 3. 기술지원직(승강기, 조경, 기계, 전기, 전산 등 시설관리원)
- 가. 시설물 점검, 시설물장비 및 녹지의 유지관리, 보수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 로자
- 4. 전문직(영양사, 연구원, 의료업무종사자 등)
- 가. 전문자격 또는 법 규정에 따라 채용되어 전문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 ②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선정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인력운영심의관실"을 "복지후생담당관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2장제1절 제목 중 "기간제근로자등"을 "공무직근로자등"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기간제근로자등"을 "공무직근로자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간제근로자등"을 "공무직근로자등"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무기계약 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급 지방법원 지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원장을 채용권자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채용권자는 저소득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무 직 근로자를 채용공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채용우대에 관한 내용을 공고내용 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근로조건"을 "근로조건, 수습기간 설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무직 근로자는 채용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권자는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의 수습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④ 채용권자는 수습 중에 있는 사람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의 신규채용 공고문에 수습기간 설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안 내하도록 하며, 직무내용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공무직 근로자를 추가로 신규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 처 예산담당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병가·휴직 등에 따른 결원으로 인하여 기간제근 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이력서 1부
- 2.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
-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필요시에 한함)

제13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근로자 채용 구비서류 중 "신원조사회보서"의 경우 각급 법원의 관할 경찰청(또는 경찰서)에 관련 법령의 근거를 명시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신원조사대상자명부, 신원 진술서,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근로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의 3.항 채용기간 하단에 "다만, 을이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 중에 있는 사람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재계약"을 "재계약, 승급, 해고,"로, "무기계약근로자로"를 "공무직 근로자"로 하다

제19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근무성적 평정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관리하는 관리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행정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근무성적은 수, 우, 양, 가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수 100분의 20, 우 100분의 40, 양 100분의 30, 가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법원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의 수.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채용권자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8의2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직종이 다양하여 전체 순 위명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종별 순위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긴급상황, 기상상황, 특별행사 등 불가피한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전후 및 휴일에도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출근, 결근 등) ① 근로자는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 ③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을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를 "연가, 반일연가, 지각, 조퇴, 외출 단위로 사전에 신청에 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로하다.

제2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각·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다만, 누계시간을 연가 일단위로 계산한 후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④ 특정일에 공무직 근로자의 휴가가 집중되어 업무공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위를 제한하여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제37조제3항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40조제4호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정년) ①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고령친화직종(청소, 경비, 주 차관리 등)의 경우 건강상태, 근무성적 평가 등 별도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의 경우는 만 65세 로 한다

- ② 고령친화직종에 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정년퇴직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근로자이 면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만 68세까지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③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 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58조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및 제16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30

# 근로계약서(공무직 근로자)

장(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1. 을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번호(핸	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201		

#### 2. 을의 신분 및 적용법률

-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과『기간제 및 공 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 3. 채용기간 : 201 . . . 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채결한 것으로 한다.

단, 을이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 중에 있는 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 근무장소 :
- 업무내용 : [예시 : 시설물 청소 및 청사 환경관리 업무외 잡무(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과 같음)]
-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 5. 근무시간 및 휴게

- 1)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한다.
- 2) 시업 및 종업시각
  - 월요일 ~ 금요일

○ 09:00 ~ 18:00 (8시간)

3) 휴게시간 : 12 : 00 ~ 13 : 00

#### 6. 임금

- 월 기본급(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원을 지급한다.
-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등 법령에 정해진 공제금은 원천징수한다.
- 연장, 야간(하오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 임금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고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임금지급은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계좌번호: 은행)

#### 7. 휴일 및 휴가

- ① 법정 휴일: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 ② 무급휴무일 : 토요일
- ③ 약정 유급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휴일(단, 무급휴무일과 겹치면 무급)
- ④ 연차휴가 등
  - 가.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다.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나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나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라. 그 밖에 연차휴가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 마.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 8. 특별휴가

- 경조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 상황, 작업 능률 등을 고려하여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휴가를 허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공무원규칙 제85조제1항에 준하여 판단 하다.

○ 특별휴가의 신청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9. 해고 등

-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해고함 수 있다.
-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2회 이상 4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고 할 수 있다.
-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 10. 준수사항

근로기간 중 습득한 업무와 관련된 비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1.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첨** 부: 서약 서

20 . . .

"갑" 장 인

*"*을" 주소:

성명: 엔

### [별지 제3-1호 서식]

# 근로계약서(기간제 근로자)

장(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1. 을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번호(	· (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201		

#### 2. 을의 신분 및 적용법률

-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과『기간제 및 공 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 3. 채용기간 : 201 . . . ~ 201 . . .
- 4.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 근무장소 :
  - 업무내용: (예시: 사업수행을 위한 채용계약일 경우, <u>"2013년부터 2015년까지</u>수행예정인 부모추가정보 자료정비 및 그 밖에 이에 부수하는 업무 일체" 등 사업 수행의 기간을 특정할 것)
  -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 5. 근무시간 및 휴게

- 1)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한다.
- 2) 시업 및 종업시각
  - 월요일 ~ 금요일
  - 09 : 00 ~ 18 : 00 (8시간)
- 3) 휴게시간 : 12 : 00 ~ 13 : 00

#### 6. 임금

- 월 기본급(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원을 지급한다.
-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등 법령에 정해진 공제금은 원천징수한다.
- 연장, 야간(하오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 임금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고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임금지급은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계좌번호 :

은행)

## 7. 휴일 및 휴가

- ① 법정 휴일: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 ② 무급휴무일 : 토요일
- ③ 약정 유급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휴일(단, 무급휴무일과 겹치면 무급)
- ④ 연차휴가 등
  - 가.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다.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나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나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라. 그 밖에 연차휴가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 마.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 8. 특별휴가

- 경조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 상황, 작업 능률 등을 고려하여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휴가를 허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공무원규칙 제85조제1항에 준하여 판단 한다.
- 특별휴가의 신청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9. 해고 등

-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해고함 수 있다.
-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2회 이상 4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고 할 수 있다.
-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 10. 준수사항

근로기간 중 습득한 업무와 관련된 비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1.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첨** 부: 서약 서

20 . . .

"갑"

장 인

"을" 주소:

성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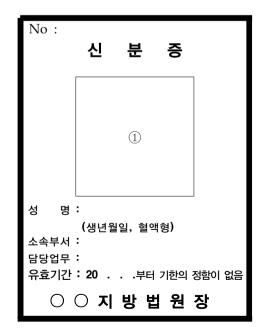
인

## [별지 제6호 서식]

36

# 근로자 신분증(공무직 근로자)

- 1. 규 격: 6.0cm × 8.5cm
- 2. 재 질 : 흰색바탕의 하드지 용지를 사용하여 사진 부착 후 코팅하여 배부
- 3. 글씨체 : 견고딕체
- 4. 글씨색 : 검정
- 5. 색 상 : 흰색바탕에 밤색 테두리(테두리두께 1.5mm)
- 6. 기재사항
  - 가. ①에 위치할 사진의 규격은 3.0cm×3.5cm의 칼라 반명함판 사진을 스캔하여 부착하고 압인하여 위조 및 변조를 방지(촬영 후 3개월 이내 사진)
  - 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며, 성명아래 괄호( )부분에 생년월일 및 혈액형을 기재
    - ⇒ 예 : 홍 길 동 (1970. 03. 20.생, A형)
  - 다. 담당업무는 간략히 기재(예 : 사무보조, 〇〇사업수행)
  - 라. 유효기간은 반드시 년, 월, 일까지 기재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 신분증을 반드시 발급부서 에 반납하도록 조치
  - 마. "No:"란에 번호를 기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바. 발급권자의 표시는 채용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 (예 : OO지방법원 OO지원장 등)



# (후면 기재사항)

- 1.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패용하여야 합니다.
- 2. 신분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 3. 유효기간 만료 시 또는 퇴직 시 신분증을 총무과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6-1호 서식]

## 근로자 신분증(기간제 근로자)

1. 규 격: 6.0cm × 8.5cm

2. 재 질 : 흰색바탕의 하드지 용지를 사용하여 사진 부착 후 코팅하여 배부

3. 글씨체 : 견고딕체

4. 글씨색 :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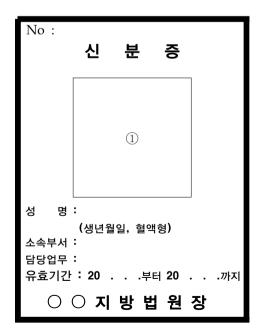
5. 색 상 : 흰색바탕에 밤색 테두리(테두리두께 1.5mm)

6. 기재사항

가. ①에 위치할 사진의 규격은 3.0cm×3.5cm의 칼라 반명함판 사진을 스캔하여 부착하고 압인하여 위조 및 변조를 방지(촬영 후 3개월 이내 사진)

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며, 성명아래 괄호( )부분에 생년월일 및 혈액형을 기재 ⇒ 예 : 홍 길 동 (1970. 03. 20.생, A형)

- 다. 담당업무는 간략히 기재(예 : 사무보조, 〇〇사업수행)
- 라. 유효기간은 반드시 년, 월, 일까지 기재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 신분증을 반드시 발급부서 에 반납하도록 조치
- 마. "No:"란에 번호를 기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바. 발급권자의 표시는 채용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 (예 : OO지방법원 OO지원장 등)



# (후면 기재사항)

- 1.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패용하여야 합니다.
- 2. 신분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 3. 유효기간 만료 시 또는 퇴직 시 신분증을 총무과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 <u>근 무 사 실 확 인 서</u>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성명 —		주민등록번호
인적 사항		한 자	
	주	소	
	소	속	
근무 사항	재 직	기 간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기간제) 20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음 (공무직)
	7]	타	○○○ 근로자
용도			○○ 제출용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O O 법 원 장

## [별지 제8-1호 서식]

# 평정단위별서열명부

○ 평정단위기관명 : ○○지 방법원 ○ 평정 대 상 직급 : ○○○ 근로자

○ 평정대상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순 위	성 명	근무부서	직책 또는 담당업무	종합평정점수	비고
	총○명				

#### ※ 확인·평정자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일 자
확 인 자					_
평 정 자					

# [별지 제9호 서식]

# <u>근 로 자 출 근 대 장</u>

20 . . 기준

- 소속기관	:				- 출 근 : -	ر ام	거 ㄱ .	ネ ol	
- 성 명					- 후 가 :				
- 근무기간	: 20 .	~			" ' '	0 E	, ,	0 E	
월일	요일	출근	결근	담당 확인	월일	요일	출근	결근	담당 확인

# [별지 제12호 서식]

# <u>징계의결요구서</u>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이코브린	③ 부 서		④ 근무기간	~ ( 년 월)
인적사항	⑤ 구 분	※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무자		
	⑥ 주 소			
⑦ 징계사유				
O 11171 11				
8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을 요구합니다.	
		년 :	월 일	
		(징계의결요	요구권자)	<u>୧</u> ୩
공무직근:	로자등 운영위	원회 위원장		

[별지 제13호 서식]

# <u>출 석 통 지 서</u>

인적사항	①성명 (한글) ④주소			_	② 소 ③ 담당 <sup>•</sup>	속 업무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장소								
유의사항	3. 정당한 사유	여 서면진술을 착하도록 진술	하고자 할 서를 제출할 아니하고	발 때에 날 것 지정된	는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위원회	개최일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i <b>공무직근로</b> 2	리규정 제 <b>4</b> 9조여 년 자동 운영위원 <b>가하</b>	웓	리와 같 일		출석을	통지합니다.	

----- 절 취 선 -----

# <u>출 석 포 기 서</u>

	① 성 명			②소 속	
인적사항	(한 글)			③ 담당업무	
	④주 소				
		141-1 11 5 (14) 1		A - 1-1 1 1	
본인은 귀 공부	무직근로자등 운영위	원회에 줄석하여	진술하는 것	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_
				성 명	ପ
공무	직근로자등	운 영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	
i					

# [별지 제15호 서식]

# <u>징계처분사유설명서</u>

소속 및 근무부서	<b>구 분</b>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무자)	성 명
주 문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사 유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공무직근로	자등 운영위원회 위원장	ପ
귀	하	

# [별지 제16호 서식]

# <u>징 계 의 결 서</u>

   징 계	소 속	구 분	성 명
대 상 자		※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무자	
의결주문			
이 유			
		공무직근로자등 운영위원 위 원 : 위	
		위 -	원 인
		위	원 덴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 제근로자 및 <u>무기계약근로자</u>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 1. (생 략)
- 2. <u>"무기계약근로자"</u>라 함은 법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로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u>무기계약근로자</u>(이하"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임명, 위촉 또는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생략)

<u>〈신 설〉</u>

# 

개

정

아

#### <u>제3조의2(직렬·직종의 구분)</u>

② (현행과 같음)

- 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직렬·직종별로 구분관리 하여야 한다.
- <u>1. 환경관리직(환경관리원, 경비원, 주차관</u> <u>리원 등)</u>

제4조(총괄부서) ①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 <u>인력운영심의관실</u>을 총괄부서로 한다.

- ② (생 략)
- 「기간제 및 <u>무기계약근로자</u> 관리규정」
   의 제·개정
- 2.~3. (생략)

제1절 기간제근로자등 운영위원회

#### 개 정 안

- 가. 시설물 청소, 주차관리, 건물의 출입자 점검, 도난, 화재방지 등 환경정비 및 경비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공무직 근로자
- 2. 행정지원직(사무보조원, 민원안내원 등) 가. 사무, 행정, 민원안내 분야에서 지원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 로자
- 3. 기술지원직(승강기, 조경, 기계, 전기, 전기, 전산 등 시설관리원)
  - <u>가. 시설물 점검, 시설물장비 및 녹지의</u> <u>유지관리, 보수업무 등을 주로 수행</u> 하는 공무직 근로자
- <u>4. 전문직 : 영양사, 연구원, 의료업무종사</u> 자 등
  - <u>가. 전문자격 또는 법 규정에 따라 채용</u> <u>되어 전문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u> 직 근로자
- ②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을 선정 부여할 수 있다.

제4소(종괄무서) ①
<u>복지후생담당관실</u>
② (현행과 같음)
1 <u>공무직 근로자</u>
2.~3. (현행과 같음)

제1절 공무직 근로자등 운영위원회

제7조(기간제근로자등 운영위원회 설치) ① 이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채용·배치·전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및 각급 기관에 <u>기간제근로</u> 자등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를 두다

- ②·③ (생 략)
- ④ 1.~4. (생략)
- 5.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6. (생략)

제9조(채용권자 등) ① 근로자의 채용권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기관장(법원공무원규 칙 제5조에 의거, 6급 이하 일반직의 임용권 의 위임을 받은 기관장을 의미함)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채용권자는 저소득층장애인 등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근로조건 등에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 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 정 안
제7조(공무직 근로자등) ①
자등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1.~4. (현행과 같음)
5. <u>공무직 근로자</u>
6. (현행과 같음)
제9조(채용권자 등) ①
다만, 각급 지방법원 지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등은 지원장이 채용권자이다.
② 채용권자는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
자 등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
고,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공고하는 경우
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채용우대에 관한
<u>내용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u>
제10조( <u>채용절차 등</u> ) ①
<u>근로조건, 수습</u>
<u>기간 설정</u>

② <u>채용권자는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u>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신 설〉

<u>〈신 설〉</u>

〈신 설〉

〈신 설〉

#### 제13조(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① 채용권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개 정 안

- ② 공무직 근로자는 채용공고에 의한 경쟁 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권자는 채용 자격 기준에 해 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 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 ③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공무직 근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 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④ 채용권자는 수습 중에 있는 사람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의 신규채용 공고문에 수습기간 설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며, 직무내용 위 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 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각급 법원은 공무직 근로자를 추가로 신 규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계획 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 예산담당부서 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병가·휴직 등 에 따른 결원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13조(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1)	
	=========

- 1. 근로계약서
- 2. 서약서
- 3. (생략)
- 4. (생략)
- 5. (생략)
- 6. 그밖에 채용 시 요구한 최종학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신 설〉

####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①~③ (생 략)

〈신 설〉

제19조(근무성적평정) ① (생 략)

#### 개 정 안

- 1. 이력서 1부
- 2.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
- 3 (현행과 같음)
- 4. (현행과 같음)
- 5. (현행과 같음)
- 6. 최종학교 <u>졸업증명서 1부(필요시에 한</u>함)
- 7.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 함)
-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근로자 채용 구비서류 중 "신원조사회 보서"의 경우 각급 법원의 관할 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관련 법령의 근거를 명 시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신원조사대상자명부, 신원진술서, 기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근로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의 3.항 채용기간 말미에 "다만, 을이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 중에 있는 사람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있다."는 문구를 기재하여야한다.

제19조(근무성적평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보수, 근무부서의 이동, <u>재계약, 무기계약근로자로의</u> 전환 여부 결정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③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는 법원공무원 명정규칙, 제6조 (평가자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평정자 및 확인자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또는 평정일 현재근무 부서 이동 후 2개월이 경과되지아니한 사람은 전 근무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한다.

〈신 설〉

<u>〈신 설〉</u>

④ 관리부서장은 평가가 완료된 근무성적평 정표를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인사기록봉 투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 개 정 안

- ----- <u>재계약, 승급, 해고, 공무직 근로자</u> 로의 -----
- ③ 근무성적 평정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관리하는 관리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행정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④ 근무성적은 수, 우, 양, 가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수 100분의 20, 우 100분의 40, 양 100분의 30, 가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법원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등급의 수,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5) 채용권자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 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8의2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직종이 다양하여 전체 순위명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종별 순위 명부를 작성할수 있다.
- ⑥ (현행 ④와 같음)

#### 제23조(근무시간 등)

①~③ (생략)

〈신 설〉

〈신 설〉

### 제27조(연차유급휴가) ① (생략)

②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 우에는 <u>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u> 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 개 정 안

## 제23조(근무시간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긴급상황, 기상상황, 특별행사 등 불가 피한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전후 및 휴일에도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 제23조의2(출근, 결근 등)

- ① 근로자는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 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 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 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 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 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 ③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 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 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7조(연차유급휴가) ① (현행과 같음)

------연가, 반일연가, 지각, 조퇴, 외출 단위로 사전에 신청에 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u>〈신설〉</u>

〈신 설〉

#### 제37조(수당등) ① · ② (생 략)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및 <u>무기계약근로</u> <u>자</u>에게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 다

#### 제40조(퇴직)

- 1. ~ 3. (생 략)
- 4. <u>무기계약근로자</u>가 정년에 도달 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
- 5. (생략)

제41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신 설〉

#### 개 정 안

- ③ 지각·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 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 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다만, 누계시간을 연가 일단위로 계산한 후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④ 특정일에 공무직 근로자의 휴가가 집중 되어 업무공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위를 제한하여 휴가를 승인할 수 있 다.

제37조(수당등) ①·② (현행과 같음)

3	 
	 공무직 근로자

#### 제40조(퇴직)

- 1. ~ 3. (현행과 같음)
- 4. <u>공무직 근로자</u>-----
- 5. (현행과 같음)

제41조(정년) ①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고령친화직종(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의 경우 건강상태, 근무성적 평가 등 별도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의 경우는 만 65세로 한다.

② 고령친화직종에 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로서 정년퇴직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근로자 이면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경 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만 68세까 지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u>〈신설〉</u>

제58조(자체 운영 내규의 제정·시행) 각급 기관의 장은 기간제 및 <u>무기계약근로자</u>의 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범 위에서 자체운영 내규를 제정·시행할 수 있 다.

## 개 정 안

3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에 도달한 날이 1
	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
	에 각각 당연 퇴직하다

제58조(자체 운영	내규의	제정·시행)	
		<u>공</u> 무직	] 근로지

# **신법령 목록** (2018, 7, 16, ~ 7,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9044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2018. 7. 16	19297	3
대통령령제2904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29046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8. 7. 17	19298	5
대통령령제29047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2904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2904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29050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2905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29052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2905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29054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29055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8. 7. 23	19302	4
대통령령제29056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2905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7. 24	19303	4
대통령령제29058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2905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29060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2906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2906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7
대통령령제29063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1
대통령령제29064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3
대통령령제29065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	29

				_
대통령령제29066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2018. 7. 30	19307	3
대통령령제2906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7. 31	19308	5
대통령령제29068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29069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i>"</i>	"	7
대통령령제29070호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2907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2907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29073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29074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29075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
【총리령】				
총리령제1477호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 부개정령	2018. 7. 23	19302	9
총리령제1476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7. 25	19304	4
총리령제1478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총리령제148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30
총리령제147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7. 26	19305	3
총리령제148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7. 30	19307	4
【부령】				
여성가족부령제126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18. 7. 16	19297	13
행정안전부령제67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7. 17	19298	13
문화체육관광부령제333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i>"</i>	"	14
국토교통부령제53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9
국토교통부령제535호	철도차량운전규칙 일부개정령	2018. 7. 18	19299	4
기획재정부령제685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7. 19	19300	3
농림축산식품부령제326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
해양수산부령제29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i>"</i>	"	20
기획재정부령제684호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2018. 7. 20	19301	5

통일부령제9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2018. 7. 20	19301	6
행정안전부령제6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11
국토교통부령제537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5
기획재정부령제68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7. 23	19302	9
산업통상자원부령제30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
국토교통부령제53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7. 24	19303	37
교육부령제160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7. 25	19304	34
국방부령제96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i>"</i>	"	36
행정안전부령제69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2018. 7. 30	19307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7. 31	19308	16
보건복지부령제58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i>ii</i>	"	20

# **○** 공지사항

## ○ 7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7월분 법률도서(531책), 일반도서(2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56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 법률도서

####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32-1 /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7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32-2 /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7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32-3 /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7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 하민경	사법정책연구원	2018	
법경제학연구 v.15−1 /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법경제학회	2018	
법과 기업연구 v.8−1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과 社會 v.57 /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박영사	2018	
法과 政策研究 v.18−1 / 한국법정책학회	韓國法政策學會	2018	
법무자료. 제328집: 통일법무 기본자료(북한법제)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8	
法曹春秋 v.2018 / 서울辯護士會 서울통합변호사회 서울地方辯護士會	서울地方辯護士會	2018	
法學論集 v.22-3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研究所	2018	
法學論叢 v.25−1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朝鮮大學校 法學研究所	2018	
法學論叢 v.35−1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8	
法學論叢 v.40-2 / 단국대학교	檀國大學校	2016	
法學論叢 v.40-3 / 단국대학교	檀國大學校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法律トラブルを解決するならこの1冊 / 石原豊昭	自由国民社	2017	
法律学概要 / 大西斎	大学教育出版	2017	
法哲學年報 v.2016 / 日本法哲學會	有斐閣	2017	
法学: 法の世界に学ぶ / 中山政義	成文堂	2017	
法学部入門: はじめて法律を学ぶ人のための道案内 / 中村邦義	法律文化社	2017	
法學新報 v.124-5 / 中央大學法學會	有斐閣	2018	
法學新報 v.124-6 / 中央大學法學會	有斐閣	2018	
比較法研究 v.79 / 比較法學會	有斐閣	2017	
司法試験の問題と解説 v.2017 /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7	
新・總合特集シリーズ. 10: 少年法適用年齢引き下げは何をもたらすか - 少年法にかかわる実務家、研究者が訴える少年司法の理 / 守屋克彦	日本評論社	2018	
新・總合特集シリーズ <sub>.</sub> 9: 共謀罪批判: 改正組織的犯罪処罰法の検討 / 山下幸夫	日本評論社	2017	
身近な法律問題Q&A / 愛知学院大学法学部同窓会	成文堂	2017	
立教法學 v.97 / 立教法學會	有斐閣	2018	
立教法學 v.98 / 立教法學會	有斐閣	2018	
早稻田法學 v.93-2 /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8	
早稻田法學 v.93-3 /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8	
重要判例解說 v.2017 / 有斐閣	有斐閣	2018	
知らぬは恥だが役に立つ法律知識 / 萩谷麻衣子	小学館	2017	
判例時報總索引 v. 2017 / 判例時報社	判例時報社	2018	
判例回顧と展望 v.2017 /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8	
現代実定法入門: 人と法と社会をつなぐ / 原田大樹	弘文堂	2017	
International journal of legal information v.46-1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2018	

#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ドイツ近現代法学への歩み / Schröder, Jan	信山社	2017	
植民地裁判資料の活用: 韓国法院記録保存所所蔵・日本統治期朝鮮の民事判決文資料を用いて / 松田利彦	人間文化研究機構国際日 本文化研究センター	2015	
戦後法制改革と占領管理体制 / 出口雄一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7	
中国法制史 / 寺田浩明	東京大学出版会	2018	

#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7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7	
經營法律 v.28-3 / 한국경영법률학회	韓國經營法律學會	2018	
競爭法研究 v.37 / 한국경쟁법학회	韓國競爭法學會	2018	
經濟法研究 v.17−1 /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2018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성재봉	충북대학교	2018	
관람스포츠 산업에서 경기주최자의 관중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이성언	중앙대학교	2018	
관세법 해설 / 이종익	세경사	2018	
근로기준법 / 하갑래	중앙경제	2018	
勞動法研究 v.44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8	
노동법편람: 법ㆍ령ㆍ규칙 대사식. 2018 / 중앙경제	중앙경제	2018	
勞動法學 v.66 / 한국노동법하회	韓國勞動法學會	201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2016	
독일 공영방송의 다양성 / 이지효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변리사 제도에 비닉특권 도입에 대한 연구: 대한변리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아주	대한변리사회	2017	
부가가치세: 2018 / 한장석	광교이택스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실태와 보호에 관한 연구: K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정강희	전남대학교	2018	
사회법연구 v.34 / 한국사회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	2018	
사회법의 발전과 과제: 서암(瑞巖) 이상광(李相光) 교수 논문집 / 이상광	중앙경제	2018	
사회적경제법연구 / 태평양	景仁文化社	2018	
세법개론: 2018 / 임상엽	상경사	2018	
消費者問題研究 v.49-1 /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2018	
수직적 거래에서의 공정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강선희	중앙대학교	2018	
스포츠와 법 v.21-2 / 한국스포츠법학회	KASEL : 한국스포츠법학회	2018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유용	중앙대학교	2018	
양도소득세: 2018 / 안수남	광교이택스	2018	
영국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범위에 대한 연구: 대한변리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박진석	대한변리사회	2017	
이나우스DB v.2018-7 /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8	
정보법학 v.22-1 /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2018	
조세법전 / 삼일인포마인	삼일인포마인	2018	
조세연구 v.18−1 / 한국조세연구포럼	세경사	2018	
중국 공민대리에 대한 연구: 대한변리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주연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한변리사회	2017	
증권법연구 v.19−1 / 한국증권법학회	三宇社	2018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개발: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지적측량 업무편람: 2017.12 / 한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17	
최저임금 30년사: 1988~2017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2017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유사도론 / 김시열	세창출판사	2018	
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ICT 통계 생산체계 혁신 방안 연구(Ⅱ): 2017.12 /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7	
특허법 2.0 / 조영선	박영사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특허요건 관련 법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정희	전남대학교	2018	
프랑스 소비자법제 분야 입법평가 사례 분석 /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2018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 정종채	삼일인포마인	2018	
혁신정책의 변인(變因) 수용과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방안 /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M&A担当者のための)独禁法ガン・ジャンピングの実務 / 帰山雄介	商事法務	2017	
(Q&A)学校部活動・体育活動の法律相談: 事故予防・部活動の運営方法・注意義務・監督者責任・損害賠償 請求 / 白井久明	日本加除出版	2017	
(チャート)勞働基準法 / 勞働調査会出版局	勞働調查会	2017	
(テキスト)法人税法入門 / 田中敏行	成文堂	2017	
(はじめての)著作権法 / 池村聡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8	
(はじめての)環境学 / 北川秀樹	法律文化社	2018	
(はじめて学ぶ)下請法 / 鎌田明	商事法務	2017	
(ベーシック)租税法 / 土屋重義	同文館出版	2017	
(ポイント解説)建設業法令遵守ガイドライン: 元請負人と下請負人の関係に係る留意点 / 建設業許可行政研究会	大成出版社	2017	
(まるごとわかる)環境法 / 見目善弘	産業環境管理協會	2017	
(わか~る)環境法 / 西尾哲茂	信山社	2017	
(わかって使える)商標法 / 亀井弘泰	太田出版	2017	
(公取委実務から考える)独占禁止法 / 幕田英雄	商事法務	2017	
(口述)勞動組合法入門 / 小西義博	日本生産性本部生産性労 働情報センター	2017	
(大系)租税法 / 水野忠恒	中央経済社	2018	
(図説)逆転裁決例精選50: 課税処分取消しのアプローチ. PartⅢ/ 伊川正樹	ぎょうせい	2017	
(図解)租税法ノート / 八ッ尾順一	清文社	2017	
(事例に見る)特許異議申立ての実務 / 千葉成就	経済産業調査会	2017	
(事例解説)農地の相続、農業の承継: 農地・耕作放棄地の権利変動と農家の法人化の実務 / 髙橋宏治	日本加除出版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設例)農地民法解説 / 宮崎直己	大成出版社	2017	
(新編)漁業法詳解 / 金田禎之	成山堂書店	2018	
(実例でわかる)漁業法と漁業権の課題 / 小松正之	成山堂書店	2017	
(実務解説)資金決済法 / 堀天子	商事法務	2017	
(実践)知的財産法: 制度と戦略入門 / 浅野卓	法律文化社	2017	
(入門図解最新)独占禁止法・景表法・下請法のしくみ: 事業者必携 / 奈良恒則	三修社	2017	
(井上)建築關係法令集 / 井上書院	井上書院	2017	
(標準)特許法 / 高林龍	有斐閣	2017	
(解説)悪臭防止法. 上 / 村頭秀人	慧文社	2017	
(解説)悪臭防止法. 下 / 村頭秀人	慧文社	2017	
(憲法から学ぶ)税務判例読解術 / 木山泰嗣	ぎょうせい	2017	
(会社の"本気"を後押しする)過重労働防止の実務対応 / TOMA社会保険労務士法人	清文社	2017	
「議事録」で読む社会保障の「法的姿」: 「結論」を得るための「理屈」 / 久塚純一	成文堂	2017	
「地積規模の大きな宅地の評価」の実務: 広大地評価の改正点と判例・裁決例 / 沖田不動産鑑定士税理士事務所	新日本法規出版	2017	
AIがつなげる社会: AIネットワーク時代の法・政策 / 福田雅樹	弘文堂	2017	
AIビジネスの法律実務 / 人工知能法務研究会	日本加除出版	2017	
イギリス勞使関係法改革の軌跡と展望: サッチャリズムからニューレイバーへ / 鈴木隆	旬報社	2017	
イギリス環境行政法における市民参加制度 / 林晃大	日本評論社	2018	
エネルギー政策論 / 高橋洋	岩波書店	2017	
タックス・ヘイブン対策税制の実務詳解: パナマ文書/抜本改正から判決事例まで / 藤枝純	中央経済社	2017	
ドイツ労働法の変容 / 名古道功	日本評論社	2018	
ノウハウ秘匿と特許出願の選択基準およびノウハウ管理法 / 高橋政治	経済産業調査会	2017	
ファンドビジネスの法務 / 伊東啓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7	
ロボットと生きる社会: 法はAIとどう付き合う? / 角田美穂子	弘文堂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ロボット法 / Pagallo, Ugo	勁草書房	2018	
ロボット法: AIとヒトの共生にむけて / 平野晋	弘文堂	2017	
改正保険業法の解説: 顧客のための保険募集の実現に向けて / 樽川流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7	
建築基準法令集 / オーム社	オーム社	2017	
競争政策論: 独占禁止法事例とともに学ぶ産業組織論 / 小田切宏之	日本評論社	2017	
景品表示法の理論と実務: 審決・命令・警告徹底整理 / 林秀弥	中央経済社	2017	
考古学のための法律 / 久末弥生	日本評論社	2017	
過労死等防止対策白書 / 日本. 厚生労働省	正陽文庫	2017	
教員自主研修法制の展開と改革への展望: 行政解釈・学説・判例・運動の対立・交錯の歴史からの考察 / 久保富三夫	風間書房	2017	
均等法・育介法・パートタイム勞働法: 基本法令・通達集 / 勞務行政研究所	勞務行政	2017	
企業法とコンプライアンス / 郷原信郎	東洋經濟新報社	2017	
企業法務の仕事 / 河村寛治	第一法規	2017	
企業法制の将来展望: 資本市場制度の改革への提言 / 資本市場研究會	財經詳報社	2017	
企業不動産法 / 小澤英明	商事法務	2018	
企業組織法: 会社法等 / 福原紀彦	文眞堂	2017	
金融商品取引法: 公開買付制度と大量保有報告制度編 / 鈴木克昌	商事法務	2017	
金融商品取引法アウトライン / 中村聡	商事法務	2017	
金融商品取引法概説 / 山下友信	有斐閣	2017	
農地法読本 / 宮﨑直己	大成出版社	2017	
多様な派遣形態とみなし雇用の法律実務: 派遣・請負・業務委託・出向・協業等′労働契約申込みみなし制 度の問題: 偽装請負防止のために / 安西愈	労働調査会	2017	
同一労働同一賃金で、給料の上がる人・下がる人: あなたの収入はどうなるか? / 山口俊一	中央経済社	2017	
東証一部上場会社の役員報酬設計 /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8	
民法改正が住宅・建築・土木・設計・建材業界に与える影響 / 匠総合法律事務所	大成出版社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法律家のための税法: 会社法編 / 東京弁護士會	第一法規	2018	
法人税法解釈の検証と実践的展開. 第3卷 / 大淵博義	稅務經理協會	2017	
不動産の法律知識 / 鎌野邦樹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7	
不動産広告の実務と規制 / 不動産公正取引協議会連合会	住宅新報社	2017	
社会保障のしくみと法 / 伊藤周平	自治体研究社	2017	
社会保険労務ハンドブック / 全国社会保険勞務士会連合会	中央経済社	2017	
社会保険労務六法. 第1分冊: 社会保険編第一編~第六編 / 全国社会保険労務土会連合会	中央経済社	2017	
社会保険労務六法. 第2分冊: 社会保険編第七編/労働編第八編 <sup>~</sup> 第十三編 / 全国社会保険労務士会連合会	中央経済社	2017	
詳説障害者雇用促進法:新たな平等社会の実現に向けて / 永野仁美	弘文堂	2018	
稅務調査と質問檢查權の法知識Q&A / 安部和彦	清文社	2017	
稅制參考資料集. 平成30年4月 / 日本租稅研究協會	日本租稅研究協會	2018	
消費者契約法・特定商取引法・割賦販売法のしくみ / 藤田裕	三修社	2017	
消費者法実務ハンドブック: 消費者契約法・特定商取引法・割賦販売法の実務と書式 / 安達敏男	日本加除出版	2017	
損失補てん規制 / 橋本円	商事法務	2018	
食品衛生小六法: 平成30年版, I: 法令 / 食品衛生研究会	新日本法規出版	2017	
食品衛生小六法: 平成30年版 II: 通知· 実例 / 食品衛生研究会	新日本法規出版	2017	
漁業権とはなにか / 熊本一規	日本評論社	2018	
原発被曝労働者の労働・生活実態分析: 原発林立地域・若狭における聴き取り調査から / 髙木和美	明石書店	2017	
原子力規制委員会: 独立・中立という幻想 / 新藤宗幸	岩波書店	2017	
原子力規制委員会主要内規集. 1 / 大成出版社第2事業部	大成出版社	2017	
原子力規制委員会主要内規集. 2 / 大成出版社第2事業部	大成出版社	2017	
銀行法 / 本間晶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7	
医療基本法: 患者の権利を見据えた医療制度へ / 医療基本法会議	エイデル研究所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医事法講座. 第8卷: 再生医療と医事法 / 甲斐克則	信山社	2017	
日本の財政を考える / 馬場義久	有斐閣	2017	
日本勞動法學會誌 v.130 / 日本勞動法學會	總合勞動研究所	2017	
臨床法医学入門: コメディカルにも役立つ虐待・性犯罪・薬物対応の基礎知識 / 山田典子	明石書店	2017	
自動運転と法 / 藤田友敬	有斐閣	2018	
電気通信・放送サービスと法 / 齋藤雅弘	弘文堂	2017	
租稅研究 v. 2018-3 / 日本租稅研究協	日本租稅研究協會	2018	
租稅研究 v. 2018-4 / 日本租稅研究協	日本租稅研究協會	2018	
租稅研究 v. 2018-5 / 日本租稅研究協	日本租稅研究協會	2018	
租税条約入門: 条文の読み方から適用まで / 木村浩之	中央経済社	2017	
中国税制の実務対応: BEPS等最新動向とリスクの解説 / 簗瀬正人	中央経済社	2017	
中国賃金決定法の構造: 社会主義秩序と市場経済秩序の交錯 / 森下之博	早稲田大学出版部	2017	
知財の正義 / Merges, Robert P	勁草書房	2017	
知的財産契約実務ガイドブック: 各種知財契約の戦略的考え方と作成 / 石田正泰	発明推進協会	2017	
知的財産權訴訟要論:特許編 / 竹田稔	發明推進協會	2017	
職業能力開発促進法 / 勞務行政研究所	勞務行政	2017	
特許法 / 茶園成樹	有斐閣	2017	
廃棄物処理法: 虎の巻 / 堀口昌澄	日経BP社	2017	
下請法の実務 / 鎌田明	公正取引協会	2017	
合理的配慮義務の横断的検討: 差別・格差等をめぐる裁判例の考察を中心に / 九州弁護士会連合会	現代人文社	2017	
現代都市法の課題と展望: 原田純孝先生古稀記念論集 / 楜澤能生	日本評論社	2018	
環境法総論と自然・海浜環境 / 阿部泰隆	信山社	2017	
会社の商標実務入門 / 正林真之	中央経済社	2017	

#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7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제회의 참가보고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8	
국제인권법과 사법: 법률가를 위한 인권편람(요약본) /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UN OHCHR)	국제인권법연구회	2016	
국제형사법과 절차 / 한국. 대법원 국제형사법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8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2018	
(ビジュアルテキスト)国際法 / 加藤信行	有斐閣	2017	
(新)国際売買契約ハンドブック / 住友商事株式会社法務部	有斐閣	2018	
グローバル金融規制 / 大山剛	中央経済社	2017	
国籍法違憲判決と日本の司法 / 秋葉丈志	信山社	2017	
國際法 / 渡部茂己	弘文堂	2018	
国際不法行為法の研究: Torts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 種村佑介	成文堂	2017	
国際税務ハンドブック / PwC税理士法人	中央経済社	2017	
国際債権契約と回避条項 / 寺井里沙	信山社	2017	
変容するテロリズムと法: 各国における〈自由と安全〉法制の動向 / 大沢秀介	弘文堂	2017	
船舶油濁損害賠償 補償責任の構造:海洋汚染防止法との連関 / 小林寛	成文堂	2017	
先住民族と国際法: 剝奪の歴史から権利の承認へ / 小坂田裕子	信山社	2017	
渉外家族法実務からみた在留外国人の身分登録 / 日本司法書士会連合会渉外身分登録検討委員会	民事法研究会	2017	
渉外戸籍のための各国法律と要件. VI: 各論〈掲載国50音順〈ハ行・ヘ〉ペルー~〈ラ行・ロ〉ロシア〉 / 竹澤雅二郎	日本加除出版	2017	
外国人のための国際結婚手続マニュアル / 佐野誠	日本加除出版	2017	
日本の死活問題: 国際法・国連・軍隊の真実 / 色摩力夫	グッドブックス	2017	
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 v.26 / 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7	
海上阻止活動の法的諸相: 公海上における特定物資輸送の国際法的規制 / 吉田靖之	大阪大学出版会	2016	

#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직선거법규운용자료. 2017 − 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공직선거법규 <del>운용</del> 자료. 2017 — I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國家와 憲法. I: 헌법총론, 정치제도론 / 성낙인총장 퇴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法文社	2018	
國家와 憲法. II: 기본권론 / 성낙인총장 퇴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法文社	2018	
규제적 의원입법의 절차적 통제에 관한 연구 / 김동한	중앙대학교	2018	
근로자의 체불임금 보호·보장에 관한 헌법적 연구 / 김종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미국의 헌법해석론: 이론과 연방대법원의 적용례를 중심으로 / 김지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변호인 조력의 헌법적 보장 / 김현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북한인권백서 v.2018 / 북한인권센터	통일연구원	2018	
世界憲法研究 v.24-1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國際憲法學會 韓國學會	2018	
스페인 헌법상 경제조항: 제128조 제2항, 제131조 제1항을 중심으로 / 임윤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정당가입 연령제한을 중심으로 / 이석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연차보고서 v.2017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영국 입법평가의 최신동향 /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2017	
위치정보법상 벌칙조항에 관한 연구 / 김도연	중앙대학교	2018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위헌심사 / 이재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정보화 시대와 헌법상 디지털 기본권 / 한국헌법학회	법원행정처	2018	
정치자금법 벌칙해설 /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8	
캐나다에서의 헌법적 대화 / 김선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laïcité)의 원칙 / 한동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헌법과 사법 / 윤진수	박영사	2018	
헌법과 통일법 v.10 /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 센터	서울대학교	2017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관한 연구 / 강신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헌법소송법 / 이동흡	박영사	2018	
憲法實務研究 v.18 / 헌법실무연구회	憲法實務研究會	2018	
헌법재판소판례집 v.29-2-1 /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7	
헌법재판소판례집 v.29-2-2 /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7	
헌법주석. [국회, 정부] 제40조~제100조 / 한국헌법학회	경인문화사	2018	
헌법주석. [법원, 경제질서 등] 제101조~제130조 / 한국헌법학회	경인문화사	2018	
(論点解説)個人情報保護法と取扱実務 / 宇賀克也	日本法令	2017	
(目で見る)憲法 / 初宿正典	有斐閣	2018	
(実務に役立つ)改正個人情報保護法: 速攻対応 / シーピーデザインコンサルティング	学研プラス	2017	
(知っておきたい)選挙制度の基礎知識 / 明るい選挙推進協会	国政情報センター	2017	
(最新)個人情報保護法 / 辻畑泰喬	日本実業出版社	2017	
(最新)個人情報保護法と秘密保持契約をめぐる法律問題とセキュリティ対策 / 千葉博	三修社	2017	
イギリス憲法 / 戒能通厚	信山社	2017	
個人情報保護法制と実務対応 / 太田洋	商事法務	2017	
改憲: どう考える緊急事態条項 · 九条自衛隊明記: ありふれた日常と共存する独裁と戦争 / 梓澤和幸	同時代社	2017	
基本権の展開 / 石村修	<b>尚學社</b>	2017	
金融機関の個人情報保護ハンドブック / 藤池智則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7	
新・判例ハンドブック憲法 / 高橋和之	日本評論社	2018	
抑止力としての憲法: 再び立憲主義について / 樋口陽一	岩波書店	2017	
日本国憲法は日本人の恥である: 米国人歴史学者「目からウロコの改憲論」 / Morgan, Jason	悟空出版	2018	
差別表現の法的規制: 排除社会へのプレリュードとしてのヘイト・スピーチ / 金尚均	法律文化社	2017	
平和の憲法政策論 / 水島朝穂	日本評論社	2017	
憲法と世論:戦後日本人は憲法とどう向き合ってきたのか/ 境家史郎	筑摩書房	2017	
憲法の裏側: 明日の日本は / 井上達夫	ぷねうま舎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憲法を百年いかす / 半藤一利	筑摩書房	2017	
憲法概説 / 松浦一夫	成文堂	2017	
憲法及び皇室典範論:日本の危機は「憲法学」が作った: 二人の公民教科書代表執筆者が熱く語る / 杉原誠四郎	自由社	2017	
憲法理論とその展開: 浦部法穂先生古稀記念 / 門田孝	信山社	2017	
憲法問題 v.29 / 全國憲法研究會	三省堂	2018	
憲法体制と実定憲法: 秩序と統合 / Smend, Rudolf	風行社	2017	
現代日本公法の基礎を問う / 木庭顕	勁草書房	2017	

#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연금 길라잡이: 신규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2018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의 한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중심으로 / 최규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 수행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김정대	한국법제연구원	2017	
(つかむ・つかえる)行政法 / 吉田利宏	法律文化社	2017	
(はじめて学ぶ)地方公務員法 / 圓生和之	学陽書房	2017	
(社会とつながる)行政法入門 / 大橋洋一	有斐閣	2017	
(新版逐條)地方自治法 / 松本英昭	學陽書房	2017	
警察法の理論と法治主義 / 島田茂	信山社	2017	
公共調達と競争政策の法的構造 / 楠茂樹	上智大學出版	2017	
国立景観裁判・ドキュメント17年: 私は「上原公子」 / 上原公子	自治体研究社	2017	
分権政策法務の実践 / 北村喜宣	有斐閣	2018	
旅費法詳解 / 旅費法令研究會	學陽書房	2017	
自治体政策法務の理論と課題別実践: 鈴木庸夫先生古稀記念 / 北村喜宣	第一法規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自治体現場の法適用: あいまいな法はいかに実施されるか / 平田彩子	東京大学出版会	2017	
地方自治論: 2つの自律性のはざまで / 北村亘	有斐閣	2017	
判例行政法入門 / 芝池義一	有斐閣	2017	
行政法概説.  : 行政法総論   宇賀克也	有斐閣	2017	
行政法判例 50! / 大橋真由美	有斐閣	2017	
行政訴訟の活発化と国民の権利重視の行政へ: 滝井繁男先生追悼論集 / 佐藤幸治	日本評論社	2017	

#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矯正硏究 v.78 / 한국교정학회	韓國矯正學會	2018	
少年保護研究 v.30-4 / 한국소년보호학회	한국소년보호학회	2017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6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2017.12 / 한국.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7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011~2016: 2017.12 / 한국.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7	
온라인 도박과 형사처벌의 한계에 관한 연구: 온라인 도박의 관리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김두원	중앙대학교	2018	
형사법의 쟁점과 판례. 2 / 영남형사판례연구회 부산지방검찰청	法文社	2018	
(講義)刑法各論 / 関哲夫	成文堂	2017	
(伊藤眞の)刑法入門: 講義再現版 / 伊藤眞	日本評論社	2017	
(最新)刑法のしくみ / 木島康雄	三修社	2017	
(逐條解說)刑事收容施設法 / 林眞琴	有斐閣	2017	
イギリスの刑事責任年齢 / 増田義幸	成文堂	2017	
イギリス犯罪学研究 / 守山正	成文堂	2017	
ケースブック刑法 / 岩間康夫	有斐閣	2017	
白夜の刑法: ソビエト刑法とその周辺 / 上田寬	成文堂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保安処分構想と医療観察法体制: 日本精神保健福祉士協会の関わりをめぐって / 樋澤吉彦	生活書院	2017	
司法福祉 / 日本司法福祉学会	生活書院	2017	
死刑執行された冤罪・飯塚事件: 久間三千年さんの無罪を求める / 飯塚事件弁護団	現代人文社	2017	
死刑判決と日米最高裁 / 小早川義則	成文堂	2017	
性暴力被害者の法的支援: 性的自己決定権・性的人格権の確立に向けて / 性暴力救援センター・大阪SACHICO	信山社	2017	
子どもの虐待防止・法的實務マニュアル / 日本弁護士連合會子どもの權利委員會	明石書店	2017	
自由を奪われた精神障害者のための弁護士実務: 刑事・医療観察法から精神保健福祉法まで / 姜文江	現代人文社	2017	
治安維持法と共謀罪 / 内田博文	岩波書店	2017	
海外刑法の旅 / 森下忠	成文堂	2017	
刑法がわかった / 船山泰範	法學書院	2017	
刑法各論 / 吳明植	弘文堂	2017	
刑法各論 / 井田良	弘文堂	2017	
刑法各論判例 50! / 十河太朗	有斐閣	2017	
刑事法の要点 / 前田雅英	東京法令出版	2017	
刑事法入門 / 大谷實	有斐閣	2017	

#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保險法研究 v.11-2 / 韓國保險法學會	韓國保險法學會	2017	
비교회사법 총서. 2: 일본회사법, 상: 법률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8	
비교회사법 총서. 3: 일본회사법, 하: 시행령 시행규칙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8	
상법강의. (하) / 정찬형	박영사	2018	
理事會制度의 再照明 / 송산 홍복기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法文社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現代會社法論 / 권기범	三英社	2017	
회사법. I / 임재연	박영사	2018	
회사법. Ⅱ / 임재연	박영사	2018	
회사소송 / 임재연	박영사	2018	
(検証)判例会社法 / 石山卓磨	財経詳報社	2017	
(総務・法務担当者のための)会社法入門 / 金子登志雄	中央経済社	2017	
(判例法理から読み解く)企業間取引訴訟 / 加藤新太郎	第一法規	2018	
M&Aにおける労働法務DDのポイント / 東京弁護士会労働法制特別委員会企業集団 再編と労働法部会	商事法務	2017	
アタック会社法 / 木俣由美	中央経済社	2017	
インセンティブ報酬の法務・税務・会計: 株式報酬・業績連動型報酬の実務詳解 / 松尾拓也	中央経済社	2017	
インターネットビジネスの法務と実務 / 石井美緒	三協法規出版	2018	
ビジネス常識としての法律 / 堀龍兒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7	
ロシア・ビジネスとロシア法 / 松嶋希会	商事法務	2017	
企業取引法 / 塚本英巨	第一法規	2017	
事業報告記載事項の分析: 平成29年6月総会会社の事例分析 /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8	
財務・非財務情報の實效的な開示。ESG投資に對應した企業報告 /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8	
株式會社法 / 江頭憲治郎	有斐閣	2017	
株主總會想定問答集: 平成30年版 /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8	
取締役・監査役のトレ―ニング /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8	
取締役・取締役会制度: 発展・最新株式会社法 / 近藤光男	中央經濟社	2017	
会社法 / 黒沼悦郎	商事法務	2017	
会社法のファイナンスとM&A / 畠田公明	法律文化社	2017	
会社法の基礎: 外国人からの50の質問 / 荒木源德	第一法規	2018	
会社訴訟・紛争実務の基礎: ケースで学ぶ実務対応 / 三笘裕	有斐閣	2017	
	<u> </u>	1	

## [사법, 소송절차, 법무]

제 1550호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검찰실무: 2018. Ⅱ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8	
민사보전 / 권창영	韓國司法行政學會	2018	
민사절차론: 2018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8	
법원도서관 이전청사 열람실 구성 방안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8	
사법 v.44 / 사법연구지원재단	사법발전재단	2018	
서울회생법원 개원기념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2017	
업무환경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분석: 다문화가정 이혼담당 법원공무원을 중심으로 / 전만석	한양대학교	2016	
연간보고서 v.2017 /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2018	
조기조정 회부제도에 관한 연구: 참여사무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2018.5.28. 조정총괄부 발표자료 / 이영선	[서울고등법원]	2018	
特別法研究 v.15 /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8	
합의부를 위한 제안 / 대한민국법원	법원행정처	2016	
(こころをつなぐ)離婚調停の実践 / 飯田邦男	民事法研究會	2017	
(ビギナーズ)少年法 / 守山正	成文堂	2017	
(講座)実務家事事件手続法. 上 / 金子修	日本加除出版	2017	
(講座)実務家事事件手続法. 下 / 金子修	日本加除出版	2017	
(裁判実務フロンティア)家事事件手続 / 秋山里絵	有斐閣	2017	
(最新)裁判実務大系. 第6卷: 建築訴訟 / 齋藤繁道	青林書院	2017	
(逐条)破産法・民事再生法の読み方 / 岡伸浩	商事法務	2018	
アメリカにおける証拠開示制度・ディスカバリーの実際 / 樋口和彦	花伝社	2017	
リーガルテック / 佐々木隆仁	アスコム	2017	
家事事件手続法. 1: 家事審判 · 家事調停 / 佐上善和	信山社	2017	
軍法会議のない「軍隊」: 自衛隊に軍法会議は不要か / 霞信彦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7	
民事再生の手引 / 鹿子木康	商事法務	2017	
民事再生の実務 / 森純子	商事法務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執行法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 / きんざい	きんざい	2017	
弁護士の基本的義務: 弁護士職業像のコアバリュー / 森勇	中央大學出版部	2018	
新債権法下の債権管理回収実務Q&A / 増本善丈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7	
心の問題と家族の法律相談: 離婚・親権・面会交流・DV・モラハラ・虐待・ ストーカー / 森公任	日本加除出版	2017	
裁判所の正体: 法服を着た役人たち / 瀬木比呂志	新潮社	2017	
裁判所沿革誌 第七卷: 平成19年1月1日から平成28年12月31日まで /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8	
債権回収基本のき / 権田修一	商事法務	2017	
債務整理事件処理の手引:生活再建支援に向けて / 日本司法書士会連合会	民事法研究会	2017	
現代訴訟法 / 町村泰貴	放送大学教育振興会	2017	

###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판례해설) 민사소송법 / 이시윤	박영사	2018	
(Law Practice)民事訴訟法 / 安西明子	商事法務	2018	
(コンメンタール)民事訴訟法 <sub>.</sub> 3: 民事訴訟法(第2編/第1~3章 第133条 <sup>~</sup> 第178条) / 秋山幹男	日本評論社	2018	
民事法律扶助活用マニュアル / 民事法律扶助研究会	現代人文社	2017	
民事訴訟・執行法の世界 / 中野貞一郎	信山社	2016	
民事訴訟雜誌 v.64 / 民事訴訟法學會	法律文化社	2017	

##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범죄수사학연구 v.3−2 / 경찰대학	경찰대학	2017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훈	충북대학교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刑事訴訟 理論과 實務 v.10-1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8	
(警察官のための)充実・犯罪事実記載例: 刑法犯: 解説・判例付き / 小川賢一	立花書房	2017	
(骨太)刑事訴訟法講義 / 植村立郎	法曹会	2017	
(事例に学ぶ)刑事弁護入門: 弁護方針完結の思考と実務 / 宮村啓太	民事法研究会	2018	
大コンメンタール刑事訴訟法 <sub>.</sub> 第11卷: 刑事訴訟特別法 / 河上和雄	青林書阮	2017	
適法・違法捜査ハンドブック / 倉持俊宏	立花書房	2017	
刑事弁護の理論 / 辻本典央	成文堂	2017	
刑事訴訟法 / 宇藤崇	有斐閣	2018	
刑事訴訟法: 平成28年、29年法改正に対応 /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8	
刑事手続におけるプライバシー保護: 熟議による適正手続の実現を目指して / 稻谷龍彦	弘文堂	2017	

##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7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 김상훈	세창출판사	2018	
물권법 / 곽윤직	박영사	2015	
미완성건물의 유치권·강제경매 대상적격에 관한 연구 / 이재석	건국대학교	2018	
民事法理論과 實務 v.18-2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학회	民事法의 理論과 實務 學會	2015	
民事法理論과 實務 v.18-3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학회	民事法의 理論과 實務 學會	2015	
民事法理論과 實務 v.19-1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학회	民事法의 理論과 實務 學會	2015	
民事法理論과 實務 v.19-2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학회	民事法의 理論과 實務 學會	2016	
民事法理論과 實務 v.19-3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학회	民事法의 理論과 實務 學會	2016	
民事法理論과 實務 v.20-1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학회	民事法의 理論과 實務 學會	2016	
民事法理論과 實務 v.20-2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학회	民事法의 理論과 實務 學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法理論과 實務 v.20-3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학회	民事法의 理論과 實務 學會	2017	
民事法理論과 實務 v.21-1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학회	民事法의 理論과 實務 學會	2017	
民事法理論과 實務 v.21-2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학회	民事法의 理論과 實務 學會	2018	
상속법학 v.3 / 한국상속법학회	유원북스	2018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2016/2017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8	
이혼재판에서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중심으로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8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안문희	사법정책연구원	2018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책임 / 이경미	중앙대학교	2018	
친족상속법 강의 / 윤진수	박영사	2018	
통계로 본 현대 한국 가족의 제문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 상담 통계집(1956~2016). Ⅲ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7	
(Q&A消費者からみた)改正民法 / 日本弁護土連合会消費者問題対策委員会	民事法研究会	2018	
(ガイドブック)成年後見制度: そのしくみと利用法 / 清水敏晶	法學書院	2017	
(カップルのための)「親愛信託」 / 松尾陽子	日本法令	2017	
(ここが変わった!)民法改正の要点がわかる本 / 有吉尚哉	SHOEISHA	2017	
(これならわかる)改正民法と不動産賃貸業 / 中島成	日本実業出版社	2017	
(スペシャリストが教える)借地権の悩みベストな解決法: 売買・相続対策から難問解決ウルトラCまで / 住友林業レジデンシャル	現代書林	2018	
(ゼロからはじめる)「家族信託」活用術 / 斎藤竜	税務研究会出版局	2018	
(プレップ)民法 / 米倉明	弘文堂	2018	
(講義)債権法改正 / 中田裕康	商事法務	2017	
(広がる)民法. 1:入門編:法の扉を開く / 大村敦志	有斐閣	2017	
(企業法制からみた)改正債権法の実務ポイント / 阿部泰久	新日本法規	2017	
(図解)債権譲渡判例集: 裁判例からみる債権回収の実務 / 吉国智彦	日本加除出版	2017	
(図解でわかる)新民法: 債権法 / 浜辺陽一郎	清文社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本当は怖い!)成年後見: 成年後見人には気をつけろ! / 仲島幹朗	文芸社	2017	
(事業者必携)抵当・保証の法律と担保をめぐるトラブル解決法 / 松岡慶子	三修社	2017	
(先例から読み解く!)土地の表示に関する登記の実務 / 後藤浩平	日本加除出版	2017	
(新・考える)民法. 1: 民法総則 / 平野裕之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8	
(新しい)債権法を読みとく / 山野目章夫	商事法務	2017	
(実例で見る)「相続」の勘どころ / 吉野広之進	税務研究会出版局	2017	
(実務裁判例)借地借家契約における正当事由·立退料 / 伊藤秀城	日本加除出版	2017	
(実務解説)民法改正:新たな債権法下での指針と対応 / 大阪弁護士会民法改正問題特別委員会	民事法研究会	2017	
(元登記官からみた)登記原因証明情報: 文例と実務解説 / 青木登	新日本法規	2017	
(子どものための)里親委託・養子縁組の支援 / 宮島清	明石書店	2017	
(条解)信託法 / 道垣内弘人	弘文堂	2017	
(知って役立つ!)家族の法律: 相続・遺言・親子関係・成年後見 / 長橋晴男	クリエイツかもがわ	2017	
(徹底解説)不動産契約書Q&A / 杉本幸雄	清文社	2017	
(逐条解説)マイナンバー法 / 水町雅子	商事法務	2017	
アメリカ代理法 / 樋口範雄	弘文堂	2017	
ヨーロッパ私法への道:現代大陸法への歴史的入門 / 五十嵐清	日本評論社	2017	
家庭裁判所における遺産分割・遺留分の実務 / 片岡武	日本加除出版	2017	
家族が亡くなったときの手続きどうしたら?事典: 葬儀、遺族年金、保険、相続など / 鈴木敏弘	つちや書店	2017	
家族が認知症になる前に準備する相続の本: 備えあれば憂いなし / 鈴木和宏	ファーストプレス	2018	
家族信託契約: 遺言相続 後見に代替する信託の実務 / 遠藤英嗣	日本加除出版	2017	
建物表示登記の実務: 資料調査・建物認定・構造判定・床面積算定 / 内野篤	日本加除出版	2017	
契約法 / 中田裕康	有斐閣	2017	
契約法講義 / 後藤卷則	弘文堂	2017	
契約責任の多元的制御 / 笠井修	勁草書房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交通事故。II: 損害論 / 藤村和夫	信山社	2017	
金融機関の相続手続 / 北川展子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7	
大改正時代の民法学 / 深谷格	成文堂	2017	
東アジア民法学と災害・居住・民族補償。中編: 補償法学現場発信集´債権法改正´恩師の遺訓 / 吉田邦彦	信山社	2017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3集(第7卷): 第97回~第99回会議議事録と部会資料 /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7	
民法. 1: 総則判例30! / 原田昌和	有斐閣	2017	
民法. 2: 物権判例30! / 水津太郎	有斐閣	2017	
民法. 4: 債権各論判例30! / 中原太郎	有斐閣	2017	
民法. 5: 親族 相続判例30! / 青竹美佳	有斐閣	2017	
民法. I: 總則 / 山田卓生	有斐閣	2017	
民法. II: 物權 / 石田 剛	有斐閣	2017	
民法概論. 1: 民法總則 / 山野目章夫	有斐閣	2017	
民法改正と不動産取引 / 吉田修平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7	
民法改正のポイントと実務対応 / 冨岡孝幸	ジェネシスビジネス出版	2017	
民法改正の解説 / 渡辺晋	住宅新報社	2017	
民法判例百選 Ⅱ:債權 / 有斐閣	有斐閣	2018	
民法判例百選. Ⅲ: 親族·相續 / 有斐閣	有斐閣	2018	
民法判例百選 <sub>.</sub> I: 總則、物權 / 有斐閣	有斐閣	2018	
民事法入門 / 野村豊弘	有斐閣	2017	
福島第一原発事故の法的責任論: 低線量被曝と健康被害の因果関係を問う. 2 / 丸山輝久	明石書店	2017	
不動産売買の紛争類型と事案分析の手法 / 岡本正治	大成出版社	2017	
事実認定体系: 民法総則編. 1 / 村田渉	第一法規	2017	
事実認定体系: 民法総則編. 2 / 村田渉	第一法規	2017	
事業再生と債權管理 v.160 / 金融財政事情研究會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18	
相続に活かす養子縁組 / 森田茂夫	日本法令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損害賠償の法務 / 喜多村勝德	勁草書房	2018	
新民法(債権関係)の要件事実: 改正条文と関係条文の徹底解説. I / 伊藤滋夫	青林書院	2017	
新民法(債権関係)の要件事実: 改正条文と関係条文の徹底解説. II / 伊藤滋夫	青林書院	2017	
新成年後見制度の解説 / 小林昭彦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17	
揉め事なしのソフトウエア開発契約: ITプロジェクトのトラブルを回避する / 英繁雄	日経BP社	2017	
医療過誤の処罰とその制限 / 于佳佳	成文堂	2017	
離婚調停 / 秋武憲一	日本加除出版	2018	
子育ては別れたあとも / 宗像充	社会評論社	2018	
早稲田民法学の現在: 浦川道太郎先生・内田勝一先生・鎌田薫先生古稀記念論文集 / 浦川道太郎先生・内田勝一先生・鎌田薫先生古稀記念論文集編集 委員会	成文堂	2017	
住民基本台帳法令·通知集:付 印鑑登錄證明事務處理要領·實例/市町村自治研究会	ぎょうせい	2017	
債権法改正と税務実務への影響 / 西中間浩	税務研究会出版局	2018	
債権法改正まるごとひとつかみ / 藤井幹晴	新日本法規	2017	
親が認知症になる前に知っておきたいお金の話: いざというときに困らないための「家族信託」 タイトルでNDLオンラインを再検索する / 横手彰太	ダイヤモンド社	2017	
親権・監護権をめぐる法律と実務 / 渋谷元宏	清文社	2017	
土地家屋の法律知識 / 自由國民社	自由國民社	2017	
戸籍実務六法. 平成30年版 / 日本加除出版法令編纂室	日本加除出版	2017	

##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법원판례해설 v.113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2018	
대법원판례해설 v.114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2018	
新·判例解說 Watch v.22 /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8	
最高裁判所判例集 v.71-3 /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7	
最高裁判所判例集 v.71-4 /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7	
最高裁判所判例集 v.71-5 /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7	
最高裁判所判例集 v.71-6 /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7	
最高裁判所判例集 v.71-7 /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7	
最高裁判所判例集索引 v.70 /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7	

#### • 일반도서

##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情報管理學會誌 v.35-2 /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8	
図書の選択: 理論と実際 / 竹林熊彦	慧文社	2017	
情報リテラシーのための図書館:日本の教育制度と図書館の改革/根本彰	みすず書房	2017	

###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7)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7	
(2018) 직종별 직업사전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2018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87(Ⅱ) / 한국. 외교부	외교부	2018	
監査論集 v.30 / 감사원	감사원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감정평가학 논집 v.17−1 /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2018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v.2017 / 국세청	국세청	2018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하여 / 박명규	한울엠플러스	2018	
소비자물가지수 연보 v.2017 / 한국. 통계청	통계청	2018	
여성연구 v.96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예산정책연구 v.7−1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8	
人口動態統計年報 v.2017-1 / 통계청	통계청	2018	
정부기구도표 v.2018 / 한국.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2018	
통일백서 v.2018 / 한국. 통일원	통일부	2018	
韓國公安行政學會報 v.70 / 한국공안행정학회	韓國公安行政學會	2018	
韓國行政硏究 v.27-1 /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研究院	2018	
国際関係・安全保障用語辞典 / 小笠原高雪	ミネルヴァ書	2017	
社会学入門 / 筒井淳也	有斐閣	2017	

##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科學技術年鑑 v.2017 /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 [역사/지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北韓學報 v.42-2 /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北韓研究所 北韓學會	2017	

## • 정기간행물 목록

## [국내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B.F.L(2018.7) 90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격월간
2	Legal Times V120	(주)리걸타임즈	월간
3	거래가격 571호	㈜거래가격	월간
4	경영법률 28집 3호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5	고시계 737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6	국제법평론 50호	三宇社	반년간
7	기업법연구 32권 2호(73호)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8	노동법률 2018.7.	中央經濟社	월간
9	노동법학 66호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0	도산법연구 7권2호, 7권3호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반년간
11	법과 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韓國法政策學會	반년간
12	법학 59권 2호(187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계간
13	사법행정 제59권 제7호(691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4	상사법연구 37권 1호(98호)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15	상사판례연구 31집 2권	韓國商事判例學會	계간
16	속보삼일총서 1475,1476,1477,1478,부록	삼일회계법인	주간
17	스포츠와 법 21권2호	도서출판 푸른세상	연3회
18	시사저널 N1497,1498,1499,1500,1501	독립신문사	주간
19	신동아 2018.8월	㈜동아피디에스	월간
20	월간 인사관리 2018.7.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21	월간조선 2018년8월	조선일보사	월간
22	월간중앙 2018.8월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월간

## [일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261호	總合勞動研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N2167,2168,2169,2170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3	別冊 商事法務 N434	商事法務研究會	부정기
4	登記情報 58권 제6호	民事法情報センタ	월간
5	N.B.L 1123호,1124호	商事法務研究會	반월간
6	COPYRIGHT V58 N686	著作權情報センター	월간
7	ジュリスト1520,1521호	有斐閣	격주간
8	パテント(Patent) V71 7호(2018.6.)	日本弁理士會	월간
9	空法 59호	日本空法學會	연간
10	国際私法年報 2017	国際私法学会	연간
11	國際商事法務 V46 N6	國際商事法研究所	월간
12	金融商事判例 N1542,1543	經濟法令研究會	반월간
13	金融法務事情 2090,2091,2092호	金融財政事情研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912,1913	勞動旬報社	순간
15	勞動判例 N1176,1177,1178	産業勞動調査所	반월간
16	登記硏究 843호	テイハン	월간
17	文藝春秋 2018.7	文藝春秋	월간
18	民商法雜誌 154권 2호	有斐閣	월간
19	發明 V115 N6	發明協會	월간
20	法律のひろば 71권 6호, 71권 7호	きょうせい	월간
21	法律時報90권6호(通卷1125號)5월임시증간(判例回顧と展望2017), 90권 제7호, 90권 제8호	日本評論社	월간
22	法律判例文獻情報 474호	第一法規	월간
23	法曹時報 70권6호	法曹會	월간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24	法學セミナー 762호	日本評論社	월간
25	法學教室 453호	有斐閣	월간
26	法學硏究 91권 4호, 91권 5호	慶應義塾大學法學研究會	월간
27	法學協會雜誌 135권 5호	有斐閣	월간
28	世界法年報 제37호	世界法学会	연간
29	税法学 579호	日本税法学会	반년간
30	損害保険研究 80권 1호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	계간
31	熊本法學 142호	熊本大學法學會	반년간
32	銀行法務21 829호	經濟法令研究會	월간
33	日本勞動法學會誌 제131호	日本勞動法學會	반년간
34	自治硏究 94권 6호	良書普及會	월간
35	租稅硏究 824호(2018.6)	日本租稅研究協會	월간
36	阪大法學 68권 1호	大阪大學法學部	격월간
37	判例タイムズ 1447호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38	判例時報 N2365,2366,2367,2368	判例時報社	순간
39	判例地方自治 N433	きょうせい	월간
40	刑事法ジャーナル V56	イウス出版	계간
41	戶籍 954호	テイハン	월간

## [양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The) national law journal 2018.6월, 7월	New York Law Pub.	주간
2	ABA journal(ABA) 2018. 7월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3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70 N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4	Air & space law VOL43 N3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	ArchivFürKriminologie;UnterBesondererBeruecksichti gun Bd241 H5-6	Max Schmidt-Romhild KG	격월간
6	Archiv für Pressrecht J49 H3	C. H. Beck	격월간
7	Arsp (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Archives For Phil) V104 ISSUE1	Franz Steiner Verlag	격월간
8	Betriebs-Berater (BB) J73 H22,24,25,26,27/2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9	BNA's Pan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2363, 2364, 2365, 2366	BNA	주간
10	Bundesgesetzblatt:Part1&Part2 I .Nr19,20,21,22/ II .Nr Bundesanzeiger 10,11 Verlagsges.mbH		주2회
11	Computer und Recht 2018 H6, I3	Dr.Otto Schmidt	월간
12	Der Deutsche Rechtspfleger J126 H1,2,3,4,5,6,7	Gieseking	월간
13	Der Spiegel 24,25,26,27	Spiegel	주간
14	Der Staat Bd57 H1	Duncker & Humblot	계간
15	Deutsche Richter Zeitung J96 H6,7/8	Carl Heymanns Verlag	월간
16	DeutschesVerwaltungsblatt(DVBL)(Includes:Verwaltungsarchiv) J133 H11,12	Carl Heymanns	반월간
17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 nw J63 H11,12	Otto Schmidt	격주간
18	Die Öffentliche verwaltung(DÖV) J71 H12,13	Kohlhammer	반월간
19	Die Praxis 2018 H5,6	Helbing & Lichtenhahn	월간
20	DISCOVER2018 MAY, JULY/AUGUST, JUNE	Kalmbach publishing co.	연10회
21	Droit Social 2018 N6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22	Europarecht J53 H3	Nomos-Verl	격월간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23	European law review V43 N3	Sweet & Mawell	격월간
24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29 H11,12,13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25	Familie Und Recht J29 H6,7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26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GRUR) J120 N6, 7	VCH	월간
27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10 H11,12,13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28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41 N2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연3회
29	Harvard Law Review V131. N8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연8회
30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prechung 6	Stollfuß	월간
3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35 N23,24,25,26	BureauofNationalAffairs(BN A)	주간
32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35 N3	KluwerLawInternational	격월간
33	Journal of World Trade V52 ISSUE3	KluwerLawInternational	격월간
34	Jura:JuristischeAusbildung Bd40 H6,7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월간
35	Juristen Zeitung (JZ)J73 H11,12,13	J.C.B. Mohr	반월간
36	Juristische Rundschau 2018 H7	Walter de Gruyter	월간
37	Juristische Schulung J58 H6,7	C.H. Beck	월간
38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8 H3,4	C.H.Beck	월간
39	Kritische Justiz J51 H2	Nomos	계간
40	La Semaine Juridique 1. entreprise et affaires2017 N23,24,25,26,+SU,27,28,29,42,43-44,45,46,47,48,49 ,50,+SU,51-52	JCP	주간
41	La Semaine Juridique 2. notariale et immobiliere2017 N22,23,24,25,26,27,28,30-34,35,36,37-38,39,40,41,42,43-44,45,47,48,49,50,51-52	JCP	주간
42	L'actualté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AJDA) N20,21,22,23	Dalloz	주간
43	Law and Human Behavior vol42. N3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44	Law Library Journal V110 N1	Westgroup	계간
45	Le Droit Ouvrier N839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46	Lloyd's Law Reports:Insurance& Reinsurance2 018 P5	LLP	연10회
47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71 H20, J72 H12	Otto Schmidt	반월간
4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NJW) J71 H23,24,25,26,27,28, spezial 11,13	C. H. Beck	주간
49	Neue Zeitschrift Fur Arbeitsrecht(Nza) J35 H11, 12, 13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0	NeueZeitschriftfürStrafrecht(Nstz) J38 H6,7	C. H. Beck	월간
51	NeueZeitschriftfürVerwaltungsrecht(NVwZ) J37 H11,12,13	C. H. Beck	월간
52	Nj Neue Justiz J72 H6	Nomos	월간
53	NZG(Neue Zeitschrift für Gasellschaftsrecht) J21 H16,17,18,19	Verlag C. H. Beck oHG	순간
54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ÖJZ) J73. H11,12	Manz	반월간
55	Praxis des Internationalen Privat-und Verfahrensrechts (IPRax) J38 H1,2,3	Gieseking Verlag	격월간
56	Public Law 2018 JULY	Sweet & Mawell	계간
57	Recht Der Arbeit J71 H3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58	Recht Und Politik J54 H2(2018/2)	Verlag GmbH	계간
59	Rechtspfleger Studienhefte J42 H3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월간
60	Rechtstheorie Bd48 H2	Duncker & Humblot. Berlin	계간
61	Recueil Le Dalloz N21,22,23,24,25 (2018)	Dalloz	주간
62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8. 7.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63	Revue Franç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8 N3	Dalloz	격월간
64	Revue Franc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PUF		계간
65	Revue Gen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2018 N2	Editions A. Pedone	계간
66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54 N2	Standford University	반년간